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12. 1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11월 20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21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7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12. 13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김 윤 수)

가. 제안이유

○2003. 7. 16. 국무총리 주재로 확정된 국가보훈처의 「호국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로 신설
(안 제3조제2항제8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